



# 장짜강시 헝리전공 유한회사 청산조 VS 짜양수 국태국제그룹 국제 무역유한책임회사, 장짜강시 위양 쌍쭈 전기유한회사의 상업·경영비 밀침해 분쟁 사건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2)民监字第253号
판결 일자	2012년 8월 6일	판결 결과	신소 신청 기각 (권리자 패)
원심 원고 (재심 신청인, 신소인)	장짜강시 헝리전공 유한공사 청산조		
원심 피고 (피신소 인, 재심피신청인)	1. 짜양수 국태국제그룹 국제무역유한공사, 2. 장짜강시 위양 쌍쭈 전기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1조		
참조 판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음)		
영업비밀	NM공사와 AC공사의 기업명칭, 양 공사의 공동 메일주소, 탄자니아 다루오쓰싸라무 16339 메일 및 공동의 법정대표자 은까오웨이		
키워드 (Keyword)	청산조(清算组), 신소(申诉), 계약상의 부수의무(合同附随义务)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장짜강시 헝리전공 유한공사 청산조(이하 '헝리공사')는 스위치, 콘센트, 전구 등 제품을 탄자니아로 수출하게 되었고, 관련된 수출업무를 원심 피고 짜양수 국태국제그룹 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국제무역공사')가 대행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수출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1년 1월 탄자니아에서 상품 주문을 하였고, 같은 해 1월 16일, 4월 10일, 6월 20일, 9월 28일, 10월 30일 헝리공사와 국제무역공사는 5장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헝리공사는 납품의무를 계속 이행하였는데, 국제무역공사는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2002년 1월 14일 국제무역공사는 탄자니아 측의 팩스를 헝리공사에게 전달하였는데, 팩스의 내용은 물품의 품질이 굉장히 나쁘니, 국제무역공사에게 지불을 잠시 멈춰달라는 내용이였다. 2002년 4월 21일 헝리공사는 무역경영에 타격을 입고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공사의 청산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헝리공사는 원심 피고들에 대해서 고객 명단 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헝리공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소를 제기한 것이다.

###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재심신청인, 신소인) ⇨	⇦ 원심 피고(재심피신청인, 신소피신청인)
본 사건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에 해당한다.	본 사건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계약서의 부수 의무로 상업비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계약서의 부수 의무로 상업비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04 판결 요지

원심 원고 형리공사가 주장하는 고객명단은 간단한 고객의 이름만 포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름 외에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당 경영정보는 비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계약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과정, 이행과정, 혹은 계약 종결 후, 당사자가 파악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보안, 유출금지 혹은 부정당한 사용금지의 부수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계약의 부수적 의무 이행과 상업비밀의 권리소유자가 비밀성을 가진 정보에 대해 비밀보안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른 개념의 일이다. 원심 피고 국제무역공사가 계약법상 비밀보안의 부차적 의무를 가진다는 점으로, 원심 원고가 정보의 비밀보안 대책을 세웠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 원고는 합리적인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임으로, 주장하는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소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